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서삼석·문대림·임호선

이병진 • 박희승 • 복기왕

소병훈 • 전진숙 • 정준호

정을호 · 이개호 · 윤준병

문금주 · 이성윤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,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2항 중 "경찰청장"을 "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"으로, "경찰 서장"을 "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"으로 한다.

제33조제5항 중 "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"을 "검찰총장,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6조(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	제26조(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		
대한 전담조사제) ① (생 략)	대한 전담조사제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<u>경찰청장</u> 은 각 <u>경찰서장</u> 으	② <u>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</u> -		
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	<u>경찰서장, 해양경찰서장</u> -		
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			
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			
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			
여야 한다.	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
제33조(전문가의 의견 조회) ①	제33조(전문가의 의견 조회) ①		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		
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	5		
"법원행정처장"은 " <u>검찰총장</u>	검찰총장, 경찰청장		
또는 경찰청장"으로 본다.	또는 해양경찰청장		